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04
----------	------

2020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찬성의원 35명)
- 나. 발 의 일 : 2021년 2월 5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 라. 상 정 일 :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술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
- 이에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사항을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 소관의 명확한 기준 설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 2. 16.~2. 23.)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7. 9.~7. 29.)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사항에 맞추어 본 조례의 ‘가산금’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2. 2. 3. 시행) 사항 중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유사한 제도의 중첩적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부과 오해 등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 등 종전까지 사용된 관련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임.

※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사항(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5조제5항)의 시행시기는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시기(2022.2.3.)에 맞추어 규정하였음.

지방세기본법 (2020. 12. 29, 일부개정)

종 전	현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	□ 납부지연 제재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일원화 및 용어순화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u>가산세로 통합</u> ○ 용어를 <u>납부지연가산세</u> 로 변경 ※ 시행: 2022.2.3.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통합 및 용어 등 정비
(지방세기본법, 2022.2.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5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54)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56)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55)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5%)
가산금(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중가산금(매월 0.75%)			

※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도 동일하게 명칭, 산정방식 등 정비

-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는 대부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본 조례 제3조제1항)하고 있으며,
 - 이 중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체납이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목적으로,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현행)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생략)

- 여기서 가산금이란 현행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제30조)과 증가산금(제31조)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가산금 종류(지방세징수법)>

구분	조 건	금액	부과횟수
가산금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의 3%	1회
증가산금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고지세액의 0.75%	최대 60개월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종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부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납부지연 제재 수단임.
- 한편,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2022.2.3. 시행, 2020. 12. 29,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기본법 §55)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지방세기본법 §55)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5%) (지방세기본법 §55①1.)
가산금(1회 3%) (지방세징수법 §30)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지방세기본법 §55①3.)
증가산금(매월 0.75%) (지방세징수법 §31)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지방세기본법 §55①4.)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된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언급 없이, 본 조례(제3조제2항제4호)의 ‘가산금(증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단순히 상위법 개정 용어를 준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기준을 현행 ‘가산금을 제외한 1천만원 이상 체납액’에 더하여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 략)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 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 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가산 금을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4. ----- ----- ----- <u>(납부지 연가산세를</u>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따라서, 본 안은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된 안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 가산금만을 제외한 고액체납액을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현행)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생략)

- 상위법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 다. (생략) ③·④ (생략)</p>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 2. (생략) ☞ (중전 “납부불성실가산세”)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 (중전 “가산금”)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 (중전 “증가산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이하 생략)

<현행 가산세 종류>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지방세법상 가산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특별징수 불성실	장부작성 의무위반	미등기 전매	장부 미기재	가장의무불 이행등	증빙불비, 미기장 등
20% (40%)	10% (40%)	1일 0.025%	3% + 1일 0.025%	10%	80%	10%	10% (30%)	10%

- 한편,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앞에서 본 ‘납부지연가산세’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과 이를 반영한 「지방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에 맞추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문(2021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 행정안전부-6196(2020.12.31.))의 적용요령에서는 가산세·가산금 통합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차세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시기인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착수보고 개최 (2021.3.5.)’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2023년 (2023.1.25.)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향후 해당 법령을 비롯한 본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 발주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국가 및 자치단체 수탁)
- ❖ 사업자 : 메타넷대우정보(주) 컨소시엄(메타넷대우정보 & 오케스트로)
- ❖ 계약금액 : 102,120,000,000원 * 계약기간 : 2021.1.29. ~ **2023.2.1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294(2021.2.25.)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요청’ 공문 및 설명자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개정안은 ‘(중)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지방세기본법」의 용어 개정 사항만 반영할 경우, 본 개정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되, 1천만원 이상 체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과 같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액체납액’ 분류 시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중전 ‘(중)가산금’)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204
----------	-------------

제안연월일 : 2021년 5월 4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변경 용어를 사용하되, 1천만원 이상 체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과 같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액체납액’ 분류 시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종전 ‘(중)가산금’)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을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산금을”을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p> <p>1. ~ 3. (생략)</p> <p>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 (<u>가산금을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생략)</p> <p>③·④ (생략)</p>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u> -----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